

# 아동학대 사건과 언론보도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1. 들어가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다. 경찰의 112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으로 전년(1,369건) 대비 13.8% 증가했으며 특히 2월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는 772건으로 전년(562건) 대비 37.4% 증가했다고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제 범죄가 많아진 것인지, 2020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아동학대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되었다.

## 2.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진 아동학대 범죄 사건

2020년 6월 여행가방 안에서 9세 남아가 사망한 사건,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9세 여아를 시민이 신고하고 보호해 준 사건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분이 커졌고 가해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던 중 2021년 1월 초 '정인이 사건'까지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학대 신고가 어린이집 교사, 병원 의사 등으로부터 3차례나 있었음에도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컸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초기 대응과 아동 보호를 주된 취지로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2020년 10월 1일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프다.

이외에도 크고 작게,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이처럼 많은 아동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점에서 슬픔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지는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일부에 그쳤다.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조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굳이 아동학대처벌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을 간과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가 약 80%에 이르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조차 쉽지 않다. 또한 가해자 처벌 이후 피해자인 아동은 누군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 - 오히려 가해자 처벌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별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던 아동학대처벌법이 전격 제정된 데에는 그 배경으로 2013년도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언론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며 언론의 순기능이라 할 것이다.

## 4.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 달라진 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 현장에서의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태도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특히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나 학교 교사, 의료인 등의 신고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

던 피해 아동들이 구조되고 보호되고 있다. 신고가 늘어난 이유로는 법에서 신고 의무 규정을 두기도 했지만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과 달리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가정 내부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며, 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신고의무가 없는 이웃, 행인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마음보다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습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는 부(父)가 있었다. 아동의 모(母)가 일을 하러 나가면 부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동에게 폭행이 가해졌고 이웃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끝에 아동을 구조하였다. 아동은 피해 진술을 하려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연인즉 아동이 초등학교생일 때도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서에 간 일이 있는데 당시 모가 선처를 호소하여 귀가조치 되었고 아이의 부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번에도 아동의 모친은 가해자인 남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그 사이 법도 강화되어 사건은 예전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처벌되었고, 아동은 가해자와 분리되었다.

이처럼 불과 3-4년 사이에 사건의 처리가 달라진 것은 아동이 성장한 이유도 있으나 법과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인식이 법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제도가 먼저 시행되고 그에 맞춰 인식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양자는 따로 떼어낼 수 없고 함께 변한다. 달라진 시민의 인식과 제도의 변화에 언론의 기여가 크든 말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 5. 언론보도의 긍정적 효과

### 가. 법 제정과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에 몇 차례 법 개정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법은 2021년 3월 16일 시행된 것으로 이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커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2021년 3월 16일자 개정법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일반 살인죄 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언론의 공은 매우 크며 이에 그치지 않고 언론보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법조와 양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 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영향

검찰은 애초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였으나 사건의 실체가 보도를 통하여 알려지면서 살인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고, 검사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후 살인죄를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021년 5월 법원은 양모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도 아동학대 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

정인이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많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를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고 처벌하여 왔으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많은 아동 사망 사건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 뿐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아동학대치사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살인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양형은 별도로 하고 살해의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부모 등 보호자라는 점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스스로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수사와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우리 사회가 2014년 특례법 제정 당시보다 아동학대 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목소리를 내게 된 데는 언론보도의 공이 가

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가해자 처벌과 아동학대 문제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6. 언론보도의 부정적 모습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열면 어김없이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있고 언론사에서 기사나 방송을 내보내면 빠른 속도로 각종 SNS와 유튜브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자극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나중에는 이 사건의 시작과 본질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린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아동 사망사건'이 있다. 예상하지 못한 DNA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으며 필자 또한 입이 벌어졌음을 숨길 생각은 없다. 사건은 곧 아동학대라는 본질을 지나쳐 아이의 친모 찾기와 친부 찾기로, 막장 스토리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시작이 언론보도라는 점이다.

벌써 5년도 넘는 일이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지원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이의 고통에는 도통 관심없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었고, 곧 기사 랭킹 최상위권에 올랐다. 나는 그 착한 아이가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목이 메어 꺾꺾 누르며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선정적인 기사에 분노로 심장이 마구 뛰었다. 누구도 제보한 적이 없지만 판결 선고가 나자 이내 기사가 올라온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그 사건이 생각났고, 검색을 하자 수년이 흘렀음에도 단 두 개의 키워드로 바로 관련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가장 자극적인 화면부터 우선 순위로 올라왔다.

아동학대 범죄가 어떤 범죄보다도 비난받는 이유는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무력하게 이유도 모른 채, 어떤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큰 이유는 피해자인 아이들을 대변해야 할 보호자가 바로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아동학대 사건을 만만하게 기사화하는 이유도 같을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보도에 대하여도 항의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없고, 그 아이를 대신하여 싸워 줄 보호자도 없다. 수사기관, 법원, 가해자의 2차 가해를 말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과 내용으로 만천하에 알리는 것도 또 다른 학대일 수 있다.

인터넷의 속성상 한 번 올라온 내용은 불멸의 생명을 얻는다. 지금도 키워드만 치면 예전에 올라온 기사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아이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수도 있다. 자극적인 보도는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법과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경계선을 잘 지켜주기를 희망한다.

## 7. 개선방안

### 가. 규제 측면

스스로 알아서 도덕적인 마음을 갖고 경계하고 자정하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공허하다. 개인과 집단의 양심에만 기대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한다. 공익, 언론의 자유, 알 권리(혹은 그러한 허울을 쓴 것들)들과 개인의 침해받는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보호해야 할 지들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피해받는 이가 힘없고 약한 자라면 그에 비례하여 보호의 강도는 당연히 세져야 할 것이다. 관련 법과 제도가 있다면 철저히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 나. 지원 측면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면 사실관계를 극화하여 보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매우 중요하며 언론의 노력으로 크고 많은 결실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과 아동의 보호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쉬운 편이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법원은 제대로 처벌하고 관련 법률이 없으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된다.

그런데 범죄예방으로 접근하면 대다수의 아동학대는 경제적 빈곤, 정신적 문제, 학대의 대물림으로 연결되고, 아동보호는 보호시설, 관계기관의 업무 등으로 연결되며,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거시적이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니 가해자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 다단한 문제이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까닭이며 아동학대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각종 언론매체가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하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덜 들이면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관련 인터뷰를 할 때 자극적인 멘트가 아닌 '재미없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영락없이 편집된다. 자극적인 기사는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며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준할 정도로 보호받는 이상 공익의 의무와 책무를 수행해야 함은 당위이다.

보도는 신속함을 생명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층보도를 하고 심층기사를 내야 한다. 힘 들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자꾸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뉴스를 지면으로 접하던 시대에는 연재기사, 기획기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빠른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애써 찾지 않는 한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그러한 기사를 자꾸 노출시켜 주어야 독자도 우리 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성숙할 수 있으며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

국가는 필요한 규제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심도 있는 기사가 자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 깊은 고민을 가지고 심층 취재를 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유도책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 8. 마치며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가해자 처벌에 관한 입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죄명과 양형에도 바로 반영되고 있으니 긍정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과 아동의 보호이다. 그런데 범죄예방으로 접근하면 거시적이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니 가해자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다단하다. 하지만 이제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전

담 공무원과 경찰관에 대한 인력증원, 아동보호시설 확충과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이러한 내용을 재미없어도 언론이 꾸준하게 알리고 목소리를 높여주었으면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엄연히 살인행위임에도 안타까운 사연을 곁들여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로 보도되었고 여론 또한 가해자에게 동정적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부모라고 하여 자식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여기지도 않으며 가해자를 대놓고 동정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변화였고 변화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 관심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아동학대는 단지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회, 국가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넘어 아동보호와 범죄예방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의 관심이 일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선두에 언론이 함께 서 있기를 바란다. 🇰🇷

